

#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29

제출년월일 : 2015. 11. 18.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2005.11.30.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편입되고 이에 따라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련조항이 일부 삭제됨.
- 이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 조항을 신설하여 별도 계좌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조항 신설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관리기금 본연의 용도에 맞게 관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안 제3조~4조)
  - 기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계좌를 통해 예치 관리하여야 함을 정함
- 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9조~11조)
  -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을 정함

## □ 입법예고결과(의견있음) : 불임1

- 입법예고 : 2015. 9. 24(목) ~ 10. 15(목) 20일간

## □ 개정조례안 : 불임 2

##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3

##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4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 현행 조례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5

-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 방침결정문

< 불임 1 >

## 입법예고 의견 및 검토 결과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의 견 제출자	제출의견	반영 여부	검 토 결 과
감사관	조례 제3조에서 장기예치금액으로 규정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제2항에서는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 일치 검토 바랍니다.	반영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함이 마땅하므로 상위법에 명시된 대로 제3조, 제4조에 장기예치금액 대신 의무예치금액으로 수정하여 표기함이 적절함.
	조례 제3조에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연도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 바랍니다.	반영	조례 3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해당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해당연도에 사용하고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가능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되어 관리되므로 해당연도 사용이란 표현 대신 "사용가능액"으로 수정함이 적절함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영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기간에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불임 2 >

##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금융기관 예치금)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및 사용가능액은 안산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7호 중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4조제1호마목”을 “제74조제6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의 차가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안전사회지원과장 손 경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안전기획담당 최 석 원
	담당자 성명·전화	조소현 (행정 2168)

< 불임 3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6. (생략)</p> <p>7. 법 제 3조제1호 <u>다목</u>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p> <p>8.~9. (생략)</p>	<p><u>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필요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4조(금융기관 예치금)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및 사용가능액은 안산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5조(기금의 용도)-----</u></p> <p>1.~6. (현행과 같음)</p> <p>7. ----- <u>나목</u>-----</p> <p>8.~9.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 비용 용자 등)</b>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p> <p><b>제9조(기금의 심의)</b>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p>	<p><b>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 비용 용자 등)</b> ① -- 제74조제6호</p> <p><b>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b></p> <p>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의 차가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소장 또는 과장</li> <li>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li> </ol> <p>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li> <li>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li> </ol>

현 행	개 정 안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p> <p>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u>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계획</li> <li>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li> <li>3. 기금의 결산</li> <li>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ol>
<p>〈신 설〉</p>	<p><u>제11조(운영)</u>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729
----------	------

제안년월일 : 2015. 12. 10.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토록 함.

## **□ 주요골자**

- 안산시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9조)
-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운영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삭제)

##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  
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  
위원회에서 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u>①~⑦ (생략)</u>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p>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운용계획</li> <li>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li> <li>3. 기금의 결산</li> <li>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li> </ul>	〈삭제〉
〈신설〉	<p>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삭제〉